

# 2001년도고성군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

(의안번호 제655호)

## 심사보고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0. 11. 21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0. 11. 27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00. 12. 11

총무위원회 상정 · 의결

### 2. 조성사유

- 고성군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 증진

### 3. 주요골자

- 기금 조성은 '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 출연  
- 매년 60,000,000원 출연
- 기금사용은 기금 조기증식을 위하여 2001년까지 사용 억제

#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금번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은 고성군 노인의 자립기반 구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1997년부터 5년간 매년 6,000만원을 일반회계 예산에서 기금을 적립하여 2001년까지 3억원의 기금만 조성하고 사용을 억제하는 내용으로서
- 현재 1997년도 이전 적립금 및 이자 112,440천원(예치일 : 2000.11.17), 1997년도 적립금 60,000천원(예치일 : 1997.12.31), 1998년도 적립금 및 이자 67,265천원(예치일 : 2000.7.6), 1999년도 적립금 60,000천원(예치일 : 1999.12.20), 2000년도 적립금 60,000천원(예치일 : 2000.12.8) 도합 359,705천원을 군금고(농협중앙회)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, 2001. 12. 31까지는 이자를 포함하여 451,848천원이 초과될 것으로 예상됨.
- 기금 관리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자금결산 및 향후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제안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음.

## 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매년 출연하는 적립기금의 예치날짜가 상이한 이유는
- 답 : 군 금고의 여유자금 운영계획에 의거 집행하기 때문에 예치일자가 일정치 않음.

## 6. 토 론 : 없음

## 7. 심사결과

- 2000. 12. 11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